
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구성에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,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부여함(안 제12조 및 제12조의2).
- 농생명산업지구 절차 및 협의 대상을 정비하고, 농촌융복합산업 판로지원 위탁 대상 확대 및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·지정 근거를 마련함(안 제18조, 제19조, 제22조의2, 제24조의2).
- 의료기기산업 관련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, 응급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 운영비 우선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를 두도록 함(안 제26조, 제29조의2, 제116조의2, 제116조의3).

II. 검토의견

1.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

- 현행법 제18조 및 제19조는 도지사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계획을 포함한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

장과 협의(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포함)를 하도록 하고, 농생명 산업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개정안은 도지사가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림축산 식품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,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(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포함)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.
- 그러나 개정안에는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어, 도지사가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었으나 아직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,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다시 거쳐야 함.
- 따라서 이 법 시행 전에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아직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는 수정의견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마련함.

<안 부칙 제2조에 대한 수정의견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<신 설>	제2조(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 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생명 산업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었으 나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지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	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제18조 제2항·제3항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-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행법에 이미 동일한 조제목이 있어 안 제116조의3의 조제목을 수정하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최 기 도)